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77호(號) 1928년(昭和 3) 7월 31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87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268호(號)(일본·만주 국제여객 및 수하물 연락운수규칙 [日滿國際旅客及手荷物聯絡運輸規則]) 중(中) 1928(昭和 3)년 8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7월 31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21조(條)의2 주유권(周遊券)을 구입[購求]하는 여객은 발매역(發賣驛)에서 아래[左]의 구간에 대하여 원권(原券)과 동일등급(同一等級)의 사이드 트립(Side trip) 왕복승차권(往復乘車券)을 구입하는 것을 득(得)함.

1. 마이바라(米原)·나고야(名古屋), 마이바라(米原)·요코하마(橫濱) 또는 마이바라(米原)·도쿄(東京) 간(間)
2. 시모노세키(下關)·나카사키(長崎) 간(間)

제22조(條) 중(中) 운임표(運賃表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. 주유권운임(周遊券運賃)

발매역(發賣驛)	경로(徑路)번호(番號)	단 위(單位)		대 인(大人)			소 아(小兒)		
				1 등	2 등	3 등	1 등	2 등	3 등
부산(釜山)	1	일본측(日本側)	금엔(金圓)	125.51	80.53	39.59	62.90	40.41	19.94
			금불(金弗)	(62.10)	(39.83)	(19.57)	(31.11)	(19.98)	(9.84)
		외국측(外國側)	금불(金弗)	23.45	16.37	9.63	10.57	7.05	4.20
경성(京城)	1 및 2	일본측	금엔(金圓)	125.56	80.57	39.61	62.92	40.43	19.95
			금불(金弗)	(62.12)	(39.85)	(19.58)	(31.11)	(19.98)	(9.83)
		외국측	금불(金弗)	23.45	16.37	9.63	10.57	7.05	4.20
평양(平壤)	1 및 2	일본측	금엔(金圓)	125.56	80.56	39.61	62.93	40.42	19.95
			금불(金弗)	(62.12)	(39.85)	(19.58)	(31.12)	(19.98)	(9.84)
		외국측	금불(金弗)	23.45	16.37	9.63	10.57	7.05	4.20

2. 사이드 트립(Side trip) 왕복운임(往復運賃)

구 간(區間)	단위	대 인(大人)			소 아(小兒)		
		1 등	2 등	3 등	1 등	2 등	3 등
마이바라(米原) — 나고야(名古屋)	금엔(金圓)	6.00	4.00	2.00	2.98	2.00	0.98
	금불(金弗)	(2.96)	(1.96)	(0.96)	(1.46)	(0.98)	(0.48)
동(同) — 요코하마(橫濱)	금엔(金圓)	23.70	15.80	7.90	11.84	7.90	3.94
	금불(金弗)	(11.78)	(7.82)	(3.90)	(5.86)	(3.90)	(1.94)
동(同) — 도쿄(東京)	금엔(金圓)	24.90	16.60	8.30	12.44	8.30	4.14
	금불(金弗)	(12.32)	(8.20)	(4.08)	(6.16)	(4.08)	(2.04)
시모노세키(下關) — 나가사키(長崎)	금엔(金圓)	16.62	11.12	5.64	8.30	5.56	2.80
	금불(金弗)	(8.22)	(5.50)	(2.78)	(4.10)	(2.74)	(1.38)

동조(同條)주(註)1을 삭제(削除)하고, 주(註)2를 주(註)1로 하며, 주(註)3을 주(註)2로 함.

제31조(條)의2 단체권(團體券)을 소지(所持)한 여객은 당해(當該) 단체권의 경로(徑路) 중(中)에서 분기(分岐)하는 구간에 대하여 그 분기역(分岐驛)에서 원권(原券)과 동일(同一)한 할인율(割引率)에 의해 동일(同一) 원수(員數) 및 동일 등급(等級)의 왕복단체권(往復團體券)을 한 구간(區間)에 대하여 일회(一回)만 구입[購求]하는 것을 득(得)함. 단(但) 원권(原券)과 동일 등급의 차량(車輛)을 연결하지 아니하는 구간(區間)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하급(下級)의 왕복단체권(往復團體券)을 구입[購求]하는 것을 득(得)함.

전항(前項)의 왕복단체권은 원권(原券)과 함께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(無效)로 함.

제34조의 운임표(運賃表) 동지철도(東支鐵道)의 부문[部] 동(同)-만저우리(滿洲里)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동(同)-만저우리(滿洲里) | 1,481 km | 달러(金弗) | 43.25 | 27.00 | 16.20 | 21.65 | 13.50 | 8.10
동조(同條)동표(同表) 우수리철도(烏蘇里[Ussuri]鐵道)의 부문[部] 블라디보스토크(浦鹽斯德·

Vladivostok)-포그라니치나야(Pogranichnaya) 행(行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블라디보스토크-포그라니치나야 | 235km | 달러(金弗) | 4.57 | 4.57 | 3.00 | 1.13 | 1.13 | 0.76
제50조(條)에 아래[左]의 1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주유권(周遊券)을 소지(所持)한 여객은 전(前) 2항(項)의 규정(規定)에 상관(相關)없이 하얼빈(哈爾濱) 보다 먼 역(驛)·항(港)으로 수하물(手荷物)의 탁송(託送)을 함을 부득(不得)함.

동조(同條) 중(中) 「주(註)」를 「주(註)1」로 개정(改正)하고, 아래[左]의 주(註)를 추가(追加)함.

2. 주유권(周遊券)을 소지(所持)한 여객으로서 하얼빈(哈爾濱)보다 더 먼 역(驛)·항(港)으로 수하물(手荷物)의 탁송(託送) 신청(申請)이 유(有)한 때는 하얼빈에서 일단 중단(中斷)하고, 동역(同驛)에서 탁송(託送) 변경(變更)을 하는 것으로 함.

제51조(條)제3항(項)을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블라디보스토크(浦鹽斯德·Vladivostok)를 경유(經由)하는 수하물(手荷物)에 대하여는 운임(運賃) 외(外) 아래[左]의 선차접속비(船車接續費)를 수수(收受)함.

1kg 또는 그 미만(未滿)마다 0.6센트(cent·仙)

최저액(最低額) 매(每) 1개당(箇當) 30.0센트(cent·仙)

제52조(條) 삭제(削除)

제54조(條)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4. 승차권(乘車券) 번호(番號) 및 등급(等級)

5. 개수(箇數) 및 중량(重量)